### 1. 개정이유

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 관리대장 수기 작성·보관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하고,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(법률 제20592호, 2024.12.20. 공포, 2026.6.21.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제재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(안 별표3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서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.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	법 제98조제1항제7	100	100	100
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	호의5			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				
으로 제출한 경우				

별표 3 제2호어목(종전의 서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 7호의5"를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"으로 하고, 같은 호 저목(종전의 어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"을 "법 제98조제1항 제7호의7"로 하며, 같은 호 처목(종전의 저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"로 하고, 같은 호 터목(종전의 커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"로 하고, 같은 호 터목(종전의 커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"를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9"으로 하며, 같은 호 퍼목(종전의 터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0"으로 하고, 같은 호 도목(종전의 노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0"으로 하고, 같은 호 도목(종전의 노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0"를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1"으로 하며, 같은 호 로목(종전의 도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1"를 "법

제98조제1항제7호의12"으로 하고, 같은 호 모목(종전의 로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2"를 "법 제98조제1항제7호의13" 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